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안식처

실버릿지판교

실버릿지판교 요양원 이용안내서



☎ 031-723-5812

(hp)www.silverridge.co.kr



실버릿지판교요양원은 에스이(주)에서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입니다. 2008년 7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저희 실버릿지판교 요양원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방문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요양원은 2002년 12월 국내 최고의 요양서비스를 추구하는 실버릿지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출범되었습니다

분당, 판교 주변에 위치한 도심속 전원형 노인전문요양 시설로 선진 운영시스템과 1, 2인실 중심의 어르신케어, 프로그램 전담 사회복지사, 전문 물리치료사 특히 충분한 정규간호사 중심의 전문 간호인력의 확충으로 협력의, 촉탁의, 가정간호사와의 협력으로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맞벌이, 핵가족화로 가정내에서 어르신들을 보살핌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아 졌습니다

저희 실버릿지판교요양원에서는 오랜 전통과 장기근속하는 전문 인력이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19년간 실버릿지 서비스현장을 마음에 새기며 실천해온 신뢰받는 요양시설로 모든 직원들이 어르신의 인권존중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이 안락하고 편안한 실버릿지판교요양원이 되도록 항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시설장 권은미 배상





실버릿지판교요양원 기관정보

◎기관상세정보

요양기관	실버릿지판교	기관기호	14113000007
지정일자	2008.05.30	전화	031-723-5812
홈페이지	www.silverridge.co.kr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사송로 80번길 7		
급여종류	시설급여		
정원	총 36명		
현원	총 명	남 명	여 명

◎시설의 규모

대지: 1,051m² 건물면적: 859m² 소유형태: 법인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3층)

설비내역: 침실, 거실,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상담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건조장, 재해대피시설, 소방시설, 특별침실, 복도

◎시설·설비현황

구분	침실	사무실	의료및간호사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상담실	특별침실	식당및조리실	화장실	세면장및목욕실	세탁장및건조장
노인요양시설	25	1	1	1	1	1	1	1	1	1	6	3	1

◎종사자근무체계

총원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축탁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기타
	1		2	1	2		1					1	

- ★시설장,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평일 상근 근무
- ★간호사: 평·휴일 구분없이 교대 근무
- ★요양보호사: 주·야간 평휴·일구분없이 교대 근무 (야간 총별1인 근무)
- ★관리인: 평휴일, 주야간 구분없이 주5일 근무

◎교통 및 주차시설 현황

- 대중교통:**
분당선 야탑역 4번출구 9번버스(사송동 공용차고지 하차), 신분당선 판교역: 2번출구를 나와서 도로 건너편 602번 버스 승차
- 자가용이용:**
사용하시는 차량의 내비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사송로 80번길 7'을 치고 성남수자원공사 방향으로 진입, 올라정원길로 우회전 30m 원편 '실버릿지판교요양원' 하차
- 주차시설현황:**
옥외주차 4대, 건물뒤주차장 2대, 총6대 주차 가능

◎입소비용

가. 2021년수급대상자의 등급별 입소비용 내역

구분	금액(원)	내역
월이용료	1등급71,900	★일별기준수가임 ★급여부분중 공단부담금 - 일반 80%, - 감경대상자 88, 92% - 기초수급자 100%
	2등급66,710	
	3,4,5등급61,520	
자부담료	1등급 431,400	★일반(20%) 30일기준 ★급여부분중 개인 부담금 - 일반 20%, - 감경대상자 8, 12% - 기초수급자 0%
	2등급 400,260	
	3,4,5등급369,120	

나.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30일기준)

비급여종류	내용	산출근거	금액(원)
식재료비	주부식비	2,200×3×30	198,000
간식비	간식	500×1×30	15,000
경관영양 유동식비	경관식	7,100×30	213,000
상급침실 이용료	특1인실	26,000×30	780,000
	1인실	23,000×30	690,000
	2인실	23,000×30	690,000

◎운영규정 개요

- 입소계약**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등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급여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 계약해지**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예정일 15일 전까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이용료**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한다.
-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 변경 시와 대상자의 요양급여수가 변경 시,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 시 변경할 수 있다.
- 시설물 사용**
시설물에 대하여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 시설급여**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건강/케어 정서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 및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한다.
- 의료서비스**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계약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시설 이용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히 조치한다.
- 특별보호**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 배상책임**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중에 입소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인은 입소어르신의 보호자 또는 보증인으로서 '질 높은 서비스'와 '시설의 상황을 보고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갖으며, '입소비용납부'와 '어르신 인적사항 변경 시 통보', '필요시 대리인 선정', 병원에 입원시 계약서에서 정한 제반 사항에 관한 책임', 그리고 '기타 시설의 규칙 준수 의무' 등을 이행 해야 한다.

◎시설 둘러보기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80번길 7에 위치한 입소정원 36명의 노인전문 요양원입니다



특1인 침실



1인 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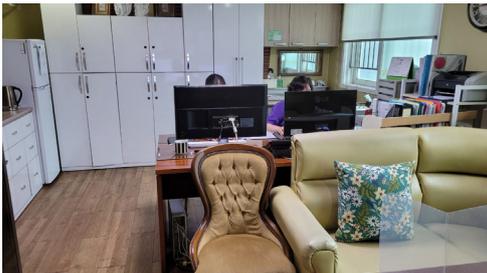


2인 침실



3인 침실

특1인 침실(6개), 1인 침실(9개), 2인 침실(9개), 3인 침실(1개)의 편안하고 개인 사생활이 존중되는 1, 2인 중심 침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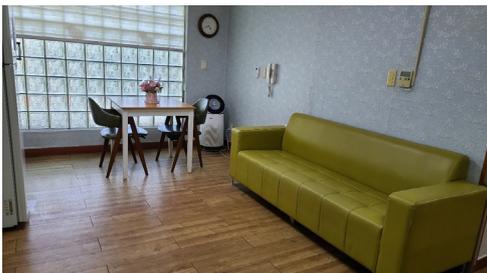
간호사실



프로그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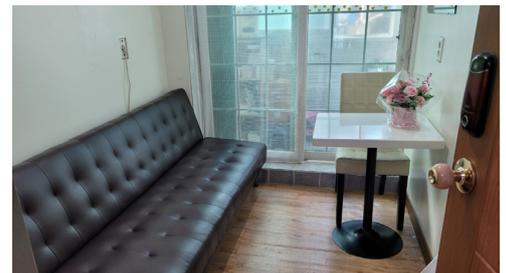
물리치료실



거실



식당



요양보호사실



비대면 옥외 면회장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르신과 가족들간의 안전한 만남을 위한 비대면 면회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책길



파고라



야외정원



일광욕장

야외활동공간

산책과 야외 프로그램, 자연속의 힐링, 일광욕을 즐길수 있는 편안한 야외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텃밭

다양한 작물이 자라는 텃밭입니다. 신선한 채소들이 어르신의 밥상에 올라갑니다



화원

어르신과 함께 꾸미는 원예회원입니다

힐링쉼터

소설가 명동백작 이봉구 문학비

◎실버릿지판교요양원의 특징

I 2002년 성남시 최초의 유료 전문노인요양시설

- ①선진 요양서비스를 주도한 유니실버(주)의 실버릿지네트워크 체인너싱홈인 실버릿지그랜드로 출범
- ②모든 간호사를 정규간호사로 채용하여 운영하는 노인전문노인요양시설로 운영

II 단독건물에 쾌적한 정원을 갖춘 안락한 어르신 생활환경

- ①도심속의 공기 좋은 전원지역의 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최적의 서비스 제공
- ②산책로 및 파고라, 텃밭, 꽃밭을 이용한 정서적 안정감과 쾌적한 여가생활 제공

III 정기 시설평가에서 수차례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 ①2013년 2015년, 2018년 시설급여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됨.

IV 장기근속 장기요양요원에 의해 제공되는 질높은 요양서비스

- ①장기근속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의 서비스
- ②최고의 고객만족율과 최저의 안전사고율 유지
- ③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온라인 역량강화 체계 시스템 활용

V 응급상황발생 시 주변 대학병원급 의료기관과 신속한 연계

- ①자동차로 5분~15분거리에 분당차병원과 재생병원, 서울대분당병원 위치
- ②신속 응급 이동이 가능한 휠체어 탑재 레이차량 운영



분당차병원



재생병원



서울대분당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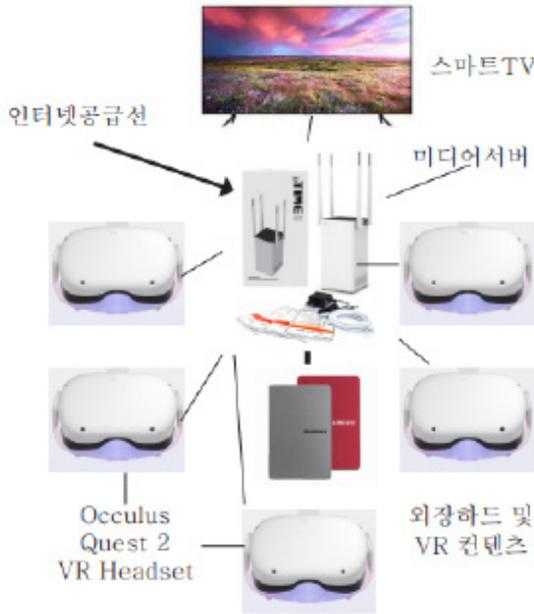


휠체어탑재 레이C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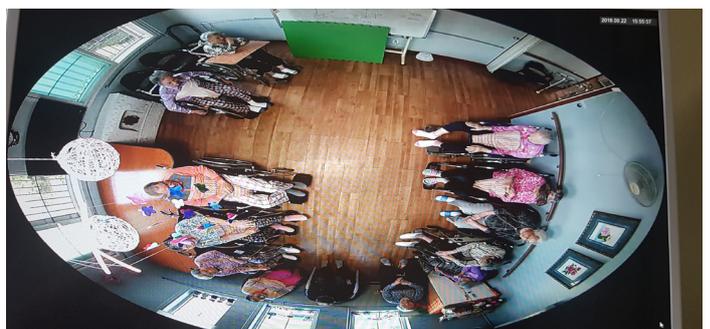
VI 실버릿지판교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 ①텃밭 및 꽃정원을 이용한 원예치료
- ②어르신들의 작업활동으로 만들어진 전시실 운영(보호자와 상호 연계)
- ③계절별 제철 음식 파티, 전통음식만들기 체험, 쿠킹클래스 운영, 옛날간식뽑기 프로그램 운영으로 특화된 음식제공
- ④사각지대가 없는 Fisheye(어안렌즈) 형 360도 조망 CCTV 운영
(안전사고예방 노인학대 및 성희롱 예방, 고가물건 분실 예방 등 효과)
- ⑤국내 최초의 가상현실 체험 프로그램 운영(VR 여행, VR전래동화, VR자연체험)
- ⑥생신 맞이하신 어르신 당일 미역국과 개인별 생신파티
- ⑦지역사회 초청행사 정기적 개최(코로나-19 유행시 비대면 줌행사 활성화)

☞국내 최초의 장기요양기관 VR 체험 서비스(2016~2021)



☞사각지대가 없는 VR CCTV



☞Zoom을이용한 지역사회 초청행사



◎실버릿지 갤러리



비대면 생신파티

코로나-19로 대면 면회가 금지됨에도 옥외비대면 면회장과 대문 앞 비대면 면회장에서 보호자들과 직원들이 모여 어르신 생신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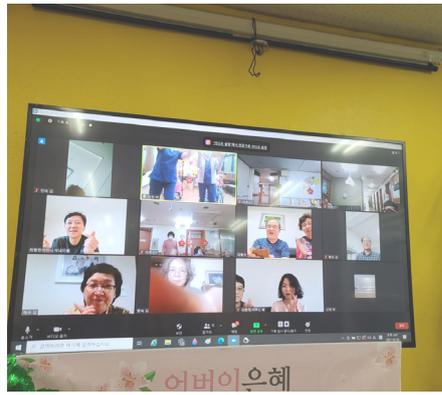
가족과의 영상통화

어르신이나 가족들의 그리움은 코로나도 막을 수 없다. 디지털기술의 발달에 따라 실버릿지의 어르신들은 수시로 영상통화를 통해 비대면 재회를 합니다. 어르신의 침실에서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영상통화를 합니다.



즐거운 원예활동

코로나-19로 대면 면회가 금지됨에도 옥외비대면 면회장과 대문 앞 비대면 면회장에서 보호자들과 직원들이 모여 어르신 생신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활동- 어버이날 행사

코로나-19로 자원봉사자가 시설을 방문하지 못하기 때문에 Zoom을 이용해서 어르신과 보호자, 직원들이 함께 어버이날 축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활동- 성탄축하 행사

2020년 성탄축하 행사를 Zoom을 이용하여 어르신과 보호자, 직원, 자원봉사자들이 비대면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쿠킹클래스와 제출음식파티, 전통음식만들기 체험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전통음식과 계절음식을 함께 만들어 음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쿠킹 클래스는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



I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II -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①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②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③ 장기요양인정절차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 → 공단직원이 어르신을 방문하여 인정조사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 → 결과 통지(등급 인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III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

② 본인부담금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시설입소 대상자

I - 장기요양 1, 2등급 수급자

II - 장기요양 3, 4등급 수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수급자

①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
-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주수발자)이 없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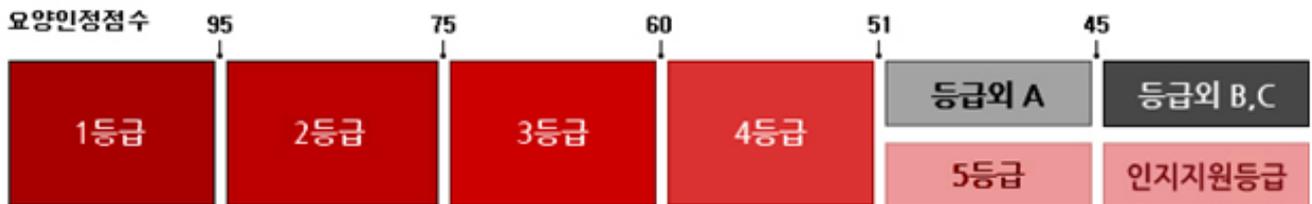
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③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III -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수급자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입소절차 및 입소시 준비물

I - 입소절차

- ① 내방 또는 전화상담
- ② 입소결정후 입소계약서 체결

II - 입소시 준비물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인정서
-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③ 건강진단서 (감염병 건강진단서, 흉부X-Ray+ 혈액검사 필수, 입소시 제출)
- ④ 의사처방전 및 복용약
- ⑤ 개인의류 및 간단한 소지품

◎급여서비스 안내

	구분	세부 서비스명
	<p>생활지원서비스</p>	<p>◎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머리감기도움 ◎몸단장 ◎옷갈아입기도움 ◎신체청결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화장실이용도움 ◎이동도움 ◎신체기능증진 ◎산책(외출)동행</p>
	<p>치매예방 활동 및 여가서비스</p>	<p>◎의사소통지원 ◎인지 및 정신 기능 향상 ◎치매예방 ◎여가활동 지원 ◎지역사회 초청활동 ◎지역사회 참여 활동</p>
	<p>물리치료 및 재활 활동 서비스</p>	<p>◎기능회복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통증치료</p>
	<p>건강간호관리</p>	<p>◎건강관찰 및 측정 ◎기초건강관리 ◎건강관찰 및 측정 ◎고혈압 당뇨 중풍 치매 등 만성질환관리 ◎씹는기능 약화 관리 ◎배설관리 ◎욕창관리 ◎장루, 유치도뇨관, 비위관 관리 ◎감염관리 ◎촉탁의 지원 및 의료기관 진료 지원 ◎응급서비스</p>
	<p>임종관리</p>	<p>◎임종징후 모니터링 및 어르신 특별 보호 ◎임종시 대응서비스 ◎특별침실관리</p>

◎코로나19 대응 - 제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유행/인원 제한	권역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개념	통상적인 방역·의료 대응 역량 이하 환자 발생	지역방역·의료 대응 한계, 권역·중앙의 협조 필요	권역대응 한계 전국적 방역·의료자원 지원 동원 필요	전국적 방역·의료 체계 한계 도달
사회복지시설	철저한 방역관리하에 공적 서비스는 필수적으로 운영			
	이용인원 자율조정 (지자체 및 시설 판단)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	

◎단계별 대응 가이드라인

▶ 제1 단계(억제단계): 방역수칙 준수하여 시설운영

- ①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 하고 비대면 서비스 병행 및 시간제-사전예약제 권장
- ② 생활시설은 외출·외박 제한적 가능, 1일 인원 통제하여 면회 실시

▶ 제2 단계(지역유행단계): 방역 강화 및 활동 제한

- ① 신체활동 제한,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 예약제 전환

▶ 제3 단계(권역유행단계): 이용전원의 50% 이하(최대100인) 운영

- ① 실내 음식물 섭취 금지 전 시설 시간제-사전예약제 원칙
- ② 생활시설은 외출·외박 원칙적 금지 및 비대면 면회 실시

▶ 제4 단계(대유행단계): 이용전원의 50% 이하 운영

- ① 지자체 판단하에 인근의 확진자 현황, 감염 가능성, 방역조치, 건축물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영 축소 또는 중지여부를 결정
- ② 시설 운영 축소 또는 중지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코로나 감염병 관리책임자

- ① 건강방역관리책임자(의료인): (정) 정일진 간호부장 (부) 정미순 간호사
- ② 직원관리전담자: (정) 정일진 간호부장 (부) 정미순 간호사
- ③ 격리실: 지하층 특별침실

